

변경대비표(ETF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거래 상대방 추가	투자 대상자산	취득 한도	결산	변동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 TIGERCD 금리투자 KIS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(CD-파생형)(합성)	○	-	○	○	-	8)
2	미래에셋 TIGERKOFR 금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(합성)	○	-	-	○	-	8)
3	미래에셋 TIGERS&P 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	○	-	○	-	-	6), 7)
4	미래에셋 TIGER 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	○	-	○	-	-	-
5	미래에셋 TIGER 모닝스타글로벌 4 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	○	-	○	○	○	7), 8)
6	미래에셋 TIGER 모닝스타글로벌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	○	-	○	-	-	-
7	미래에셋 TIGER 차이나 HSCEI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	주 2)	-	○	○	8)
8	미래에셋 TIGER200IT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○	○	7), 8)
9	미래에셋 TIGER200 중공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○	○	7), 8)
10	미래에셋 TIGER2 차전자태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○	7), 8)
11	미래에셋 TIGERKRX2 차전자 K-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-	7), 8)
12	미래에셋 TIGERKRXBBIGK-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-	7), 8)
13	미래에셋 TIGERKRX 바이오 K-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-	7), 8)
14	미래에셋 TIGERKRX 인터넷 K-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-	7), 8)
15	미래에셋 TIGERMSCIKOREATotal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○	7), 8)
16	미래에셋 TIGERMSCIUS 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(파생형)(합성 H)	-	주 1)	○	○	○	7), 8)
17	미래에셋 TIGERS&P500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(합성 H)	-	-	-	○	○	7), 8)
18	미래에셋 TIGER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○	7), 8)
19	미래에셋 TIGER 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○	○	7), 8)
20	미래에셋 TIGER 글로벌클라우드컴퓨팅 INDXX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	-	-	○	-	7), 8)
21	미래에셋 TIGER 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○	○	7), 8)
22	미래에셋 TIGER 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-	-	-	○	○	8)
23	미래에셋 TIGER 단기통안채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-	-	-	○	○	8)
24	미래에셋 TIGER 미국다우존스 3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	-	-	○	○	8)
25	미래에셋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	-	-	-	○	○	8)

26	미래에셋 TIGER 미국달러선물인버스 2X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(달러-파생형)	-	-	-	○	-	-
27	미래에셋 TIGER 미국채 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	-	-	-	○	○	7), 8)
28	미래에셋 TIGER 미국테크 TOP10 INDXX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-	8)
29	미래에셋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-	7), 8)
30	미래에셋 TIGER 미디어컨텐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○	7), 8)
31	미래에셋 TIGER 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○	○	7), 8)
32	미래에셋 TIGER 여행레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○	8)
33	미래에셋 TIGER 유로스탁스 5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	-	-	○	○	-	-
34	미래에셋 TIGER 일본니케이 225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	-	-	○	○	7), 8)
35	미래에셋 TIGER 중장기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	-	-	-	○	○	8)
36	미래에셋 TIGER 차이나 A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재간접형)(합성)	-	주 1)	-	○	○	8)
37	미래에셋 TIGER 차이나 A 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(합성)	-	-	-	○	○	8)
38	미래에셋 TIGER 차이나항생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-	7), 8)
39	미래에셋 TIGER 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○	○	8)
40	미래에셋 TIGER 코스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○	8)
41	미래에셋 TIGER 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○	○	6), 7), 8)
42	미래에셋 TIGER 화장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○	7), 8)

2. 변경 사항:

- 1)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추가
- 2) 투자대상자산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 변경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7) 법 개정사항 반영
- 8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3월 31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추가

- 미래에셋TIGERCD금리투자KIS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(CD-파생형)(합성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9. 가. (1) 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 <생략> <추가>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 <생략> <u>미래에셋증권(AA, 2023.02.16), 한화 투자증권(AA-, 2023.02.17), 유안타증권(AA-, 2023.02.20)</u>

- 미래에셋TIGERKOFR금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(합성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9. 가. (1) 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 <생략> <추가>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 <생략> <u>한화투자증권(AA-, 2023.02.17)</u>

- 미래에셋TIGERS&P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
-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
-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
-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
-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(합성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9. 가. (1) 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 <생략> <추가>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 <생략> <u>미래에셋증권(AA, 2023.02.16)</u>

2) 투자대상자산 변경

주1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 대상자산 등)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 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<u>3. <신설></u>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 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 다.)</u>

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3. <신설></p> <p>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p> <p>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
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</p> <p>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환매조건부매수]</p> <p><생략></p> <p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p>
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</p> <p>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</p> <p><생략></p> <p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p>

주2)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-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통화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. 이하 "파생상품"이라 한다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-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통화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. 이하 "장내 파생상품"이라 한다)</p>

제 16 조(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)	4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할 수 있다.	4. 장내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할 수 있다.
제 17 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	<u>7.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u> <u>8.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</u>	<삭제>
제 18 조 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6 조제 4 호 내지 제 7 호, 제 17 조제 2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제 17 조제 2 호, 제 3 호가목, 제 5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제 17 조제 9 호 및 제 10 호의 규정은 지수 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6 조제 4 호 내지 제 7 호, 제 17 조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제 17 조제 2 호, 제 3 호가목,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제17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파생상품]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통화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합니다) (위험평가액 기준 10% 초과가능)	[장내파생상품]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통화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) (위험평가액 기준 10% 초과가능)
제 2 부. 8. 나. 투자제한	5. <u>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u> 6. <u>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</u>	<삭제>

3)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
- 미래에셋TIGERCD금리투자KIS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(CD-파생형)(합성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6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1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</u>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초과로 한다. 다만,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</u>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초과로 한다.	1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초과로 한다. 다만,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초과로 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파생상품] 투자비율 <u>위험평가액 기준 50% 초과</u>	[파생상품] 투자비율 50% 초과

- 미래에셋TIGERS&P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
-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
-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
-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
- 미래에셋TIGER유로스타크스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 16 조(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)	1. 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	1. 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파생상품] 투자비율 (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합쳐) <u>위험평가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 60% 초과	[파생상품] 투자비율 (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합쳐) 투자신탁 자산총액60% 초과

- 미래에셋TIGER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(파생형)(합성 H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6 조(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)	1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	1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파생상품] 투자비율 <u>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</u> 60% 초과	[파생상품] 투자비율 60% 초과

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 비용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

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TIGER200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27.45	26.85
미래에셋TIGER200중공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7.65	37.21
미래에셋TIGER2차전지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8.48	41.83
미래에셋TIGERMSCIKOREA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2	2	23.88	22.6
미래에셋TIGER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(파생형)(합성 H)	1	1	32.09	31.46
미래에셋TIGERS&P50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(합성 H)	1	1	40.94	44.38
미래에셋TIGER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25.62	25.16
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2	2	20.53	19.81
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2	2	23.19	24.35
미래에셋TIGER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6	6	0.12	0.19
미래에셋TIGER단기통안채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6	6	0.08	0.12
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	2	2	20.56	24.78
미래에셋TIGER미국다우존스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2	2	20.39	20.26
미래에셋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	4	4	-	8.73
미래에셋TIGER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	4	4	9.46	9.23
미래에셋TIGER미디어컨텐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6.17	37.16
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2.56	29.44
미래에셋TIGER여행레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5.22	34.54
미래에셋TIGER일본니케이225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2	2	18.93	22.28
미래에셋TIGER중장기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	5	5	3.08	4.36
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재간접형)(합성)	1	1	41.86	39.44
미래에셋TIGER차이나A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(합성)	2	2	20.02	19.47
미래에셋TIGER차이나HSCE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2	2	18.6	23.43
미래에셋TIGER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2	2	23.56	22.38
미래에셋TIGER코스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2	2	22.91	22.19
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2.71	29.68
미래에셋TIGER화장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3.4	32.5

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7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 지시 등)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 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 업자 및 신탁업 자의 변경)	① <u>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②~③ <생략> ④ 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</u>

		<p><u>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--	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<p>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</p>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</p>

8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<p>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</p> <p>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</p> <p>- <u>신탁업자 : 국민은행</u></p>	<p>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</p> <p><삭제></p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